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상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 대상 가운데, “상표 조사보고서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시행령 제12조제8호)”은 상표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긴급한 처리가 필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우선심사의 대상 가운데 “상표 조사보고서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제8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되는 우선심사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우선심사를 신청한 상표출원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우선심사의 대상) ----- ----- ----- ----- ----- ----- ----- -----.
1. 7. (생략)	1. 7. (현행과 같음)
8.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선행 상표의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경우	<삭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8343